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432호

2017. 10. 16.(월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17-2151호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공표 공고	2
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2151호

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공표 공고

「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」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서울특별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청구에 대한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6일
서울특별시장

공 고 사 항

구 분	내 용
제정조례명칭	○ 「서울특별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」
청구인의 대표자	○ 성 명 : 손 솔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
청구취지	○ 「서울특별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청구
청구이유	○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 필요
주요내용	○ 청년월세 지원대상, 청년월세 지원계획이 수립 및 시행 ○ 청년월세지원 심의위원회 설치, 위원회 구성 및 기능, 회의개최, 위원장 직무, 임기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(02-2133-77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